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NH투자증권(주)

2. 제재조치일 : 2026. 7. 6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원	○ 과태료 25백만원 부과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

(1)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

☐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①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②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, ③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(투자권유자문인력,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)로 통지하여야 함에도,

- NH투자증권 A센터 前 상무대우 甲(투자권유자문인력)은 매년 소속 회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실시하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준법교육*을 이수하고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법규 및 이에 따른 준수 의무를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,

* '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도 안내', '주문기록 유지의무 및 유선업무 관련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'

- 2020.1.2. ~ 2025.2.18.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(최대투자원금 : 74백만원, 매매일수 627일)하면서(① 자기 계산), 소속 회사에 타인 명의(지인 乙)로 개설된 1개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(② 타인명의 계좌),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(③ 매매명세 미통지) 사실이 있음